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38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원이ㆍ이해식ㆍ김남근

서영석 · 김선민 · 박지혜

전진숙 • 박홍근 • 김교흥

김동아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 비를 설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손실보상) 산업통상자원부	제30조(손실보상)		
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	<u>다음 각 호</u>		
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			
<u>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u>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		
	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		
	<u>전사업자</u>		
<u> <신 설></u>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